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4.30.
IBK 로우코스트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DF286]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높은위험]						IB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투자전략 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에 투자하여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증권 등의 가격하락위험, 자산배분위험, 재간접투자위험, 해외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IBK 로우코스트 TDF 2045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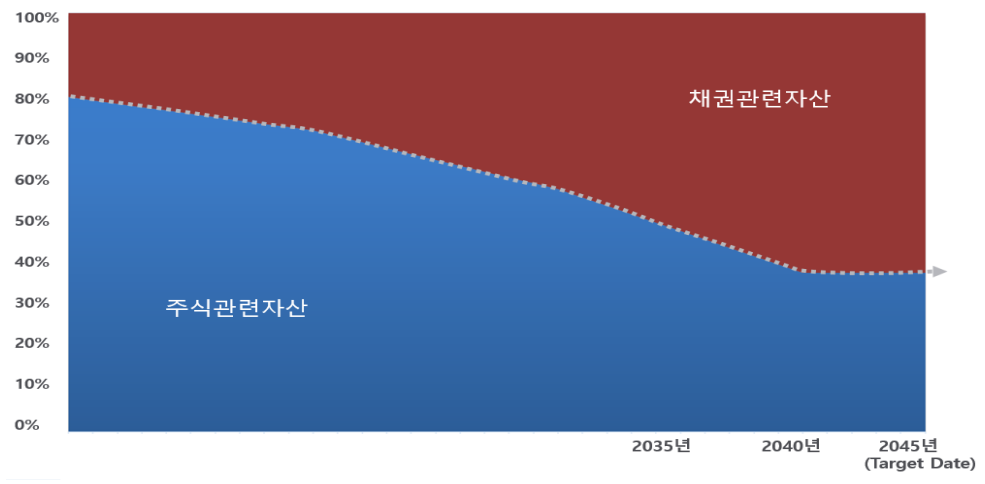
※ **비교지수(벤치마크): 해당사항 없음**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지정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지정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기본적으로 "IBK 로우코스트 TDF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및 "IBK 로우코스트 TDF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9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장기적인 투자목적 달성을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2045년으로 설정하고, 생애주기형 자산배분모델(GlidePath) 등을 활용하여 해당 특정목표시점을 고려하여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별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생애주기형 자산배분모델(GlidePath)은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에 근접할수록 국내·외 주식관련 모투자신탁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국내·외 채권관련 모투자신탁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용합니다.

<생애주기형 자산배분모델(GlidePath) 예시>



<모펀드 투자비중 예시>

잔여기간	20년	15년	10년	5년	0
로우코스트 TDF 증권모 [주식-재간접형]	72% 수준	65% 수준	58% 수준	48% 수준	40% 이하 수준
로우코스트 TDF 증권모 [채권-재간접형]	28% 수준	35% 수준	42% 수준	52% 수준	60% 이상 수준

※상기 생애주기형 자산배분모델(GlidePath) 및 모펀드 투자비중 예시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향후 국내외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및 투자대상자산의 기대수익과 변동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의 업무(이 투자신탁의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고려한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 포함)에 대하여 **Principal Asset Management Company(ASIA), Ltd.**의 자문을 받으며, 투자대상종목과 투자비중 등은 IBK자산운용(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투자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절차 및 투자자에 대한 공시는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변경절차를 따를 계획입니다.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사항>

① 업무위탁의 범위와 사유

구분	내용
업무위탁의 범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② 투자자문업자의 회사 개요(2023.01.01기준)

구분	내용
회사명	Principal Asset Management Company(ASIA), Ltd.
설립일	1997.12.24 법인 설립 / 2016. 4. 29 투자자문업 등록
주소	Unit 1001-1002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연락처 및 홈페이지	(+852) 3519-2000 / www.principal.com.hk

※ 상기 운용전략은 금융시장 상황 및 운용전문인력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문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환헷지전략>

이 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USD)에 투자하며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분(주식을 제외한 외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활용한 환헷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헷지 비율: 주식관련자산을 제외한 외화표시 자산 NAV의 80% 이상 수준)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헷지 대상 자산 및 환헷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헷지비율은 목표 헷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해외재간접형)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5%이내	0.421	0.160	0.87	0.5734	110	172	238	377	7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0.721	0.460	1.21	0.8734	92	187	287	498	1,10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25%이내	0.341	0.080	0.58	0.4934	77	131	187	308	6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491	0.230	0.76	0.6434	68	138	212	368	82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채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 출합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 비율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비중으로 가장 평균하여 약 [0.12]%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로 실제발생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운용전문 인력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4.05.01 ~ 25.04.30	23.05.01 ~ 25.04.30	22.05.01 ~ 25.04.3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Cf)(%)	2021.03.19	10.01	11.37	8.50	-	7.45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9.38	8.23	9.25	-	8.71

- (주1) 비교지수 : 없음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4) 이 투자신탁의 투자실적은 작성기준일 현재 기재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류현욱	1972	책임(이사)	24개	3,765 억원	10.47	11.37	6.25	9.87	18년 2개월
PAOSJAN	1993	부책임(과장)	21개	3,612 억원	10.47	11.37			6년 10개월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패시브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

유의사항	<p>생활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p>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p> <p>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p>시장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채권, 주식, 다양한 대체투자자산 및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국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p>
	<p>국가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국가의 시장·정치·경제적 상황·정부정책·과세제도 등의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자산배분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재간접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ETF)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증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p>

	비교지수가 없는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의 특성 상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위험이 감소되거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교지수를 책정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자산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지연	국제 결제와 관련된 송금 지연 및 해외증권시장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분(주식을 제외한 외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나, 이러한 전략이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헷지에 대한 사항은 투자신탁 환위험관리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처리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처리에 대한 위험(오퍼레이션 위험)이 존재합니다.		
매입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환매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ibk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수익자는 별도의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됩니다.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참조)]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IBK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27-88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ibk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	
효력발생일	2025년 6월 11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p>판매회사</p>	<p>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p>	
<p>참조</p>	<p>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집합투자기구의 종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p>	
	<p>종류(Class)</p>	<p>집합투자기구의 특징</p>
	<p>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p>	<p>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수수료 미징구(C)</p>	<p>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온라인 (e)</p>	<p>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오프라인</p>	<p>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p>
	<p>온라인 슈퍼(S)</p>	<p>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p>무권유 저비용(G)</p>	<p>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개인연금 (P)</p>	<p>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기타 퇴직연금 (R)</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p>
<p>전문투자자(f)</p>	<p>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 9 호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외국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서 가입 가능한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p>	
<p>랩 (w)</p>	<p>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퇴직연금 (O)</p>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